

석사학위논문

조선 후기 僧의 신분 구성과
존재 양태

-17~18세기 『단성현호적대장』 분석을 중심으로-

2025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김 미 영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권기중

조선 후기 僧의 신분 구성과 존재 양태

-17~18세기 『단성현호적대장』 분석을 중심으로-

The Status and Existence of Buddhist Monks in Late Joseon
-A Study Focused on 17th-18th Century Danseong Hojeok-

2024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김 미 영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권기중

조선 후기 僧의 신분 구성과 존재 양태

-17~18세기 『단성현호적대장』 분석을 중심으로-

The Status and Existence of Buddhist Monks in Late Joseon
-A Study Focused on 17th-18th Century Danseong Hojeok-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김 미 영

김미영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4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조규태 (인)

심사위원 권기중 (인)

심사위원 윤성호 (인)

국 문 초 록

조선 후기 僧의 신분 구성과 존재 양태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학 과
한 국 사 전 공
김 미 영

戶籍大帳은 개인의 신상정보와 함께 개인에게 부과한 職役을 기재함으로써 국가의 역 수취를 위한 장부로 활용되었다. 호적에는 主戶의 직역을 물론 해당 戶에 속해있는 구성원의 직역까지 상세하게 서술되어 수많은 개인과 다양한 직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호적은 일찍이 조선시대 사회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지만,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직역들이 다수 존재하기도 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僧이다.

僧은 전통적으로 役에서 면제되는 집단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양란을 거치며 양역 자원의 확보가 시급했던 상황과 맞물려 僧은 1678년(숙종 4) 호적에 등재되기 시작하였다. 국가가 僧을 공식적인 국역 체계의 대상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僧은 별도의 戶로 묶여 관리되었는데, 僧의 신분을 밝히 고자 한 연구들은 주로 이 僧戶에 집중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僧戶는 役을 질 수 있는 일부 인원만을 기재하였다는 한계가 발생하며 僧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僧이 된 개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밝히기 위해 호적 본문에서 확

인되는 출가자에 주목하였다.

본고에서는 『단성현호적대장』을 통해 출가자의 양상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때 출가자는 ‘爲僧’, 즉 ‘승이 되었다.’고 표현된다. 본고는 출가자의 직역과 四祖의 직역을 함께 분석하여 僧의 존재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7~18세기 『단성현호적대장』에 등장하는 출가자의 수는 총 129명이었다. 이때 출가자의 직역은 幼學으로 대표되는 양반층부터 奴婢까지 다양하였다. 幼學이나 양인 상층 직역에 해당하는 校生·武學·業武 등 상층 직역자의 경우 모두 특정 시기에 직역 상승을 겪은 가계임이 확인되었다. 즉, 직역이 상승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던 가계였던 것이다.

일반 균역층의 경우, 가장 많은 출가자가 등장하였다. 이때 保人·匠人 등 다양한 직역의 출가자들이 확인된다. 그 중에서도 父나 兄弟의 직역이 상승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일반 균역층 내부에서도 여러 양상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僧戶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던 良人僧의 존재를 넘어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출가자의 직역은 幼學부터 일반 양인의 직역인 保까지 다양했던 것이다.

『단성현호적대장』에서는 노비 출가자의 존재도 확인된다. 이들은 주인에게 예속된 존재였으므로 이들의 출가는 양인의 출가와는 조금 달랐을 것이다. 이에 奴婢의 주인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어떤 戶의 노비가 출가하였는지 살폈다. 그 결과 출가한 奴婢의 주인은 단성현 유학호의 평균 노비수보다 많은 노비를 보유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호적대장 상에서 나타나는 출가자는 양반 직역으로 인식되는 유학층부터 양인 중 상층직역을 가지는 이들, 保로 나타나는 일반 양인층과 노비 출가자까지 다양한 양상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 후기 출가자의 신분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요어】 단성현호적대장(丹城縣戶籍大帳), 승(僧), 위승(爲僧), 승역(僧役), 신분(身分)

목 차

제 1 장 머리말	1
제 2 장 儂의 호적 등재와 구성	6
제 3 장 호적 내 儂의 존재 양상	12
제 1 절 儂의 시기별 추이	12
제 2 절 儂의 신분 구성	15
제 4 장 맺음말	27
참 고 문 헌	31
부 록	34

표 목 차

[표 1] 17~18세기 『단성현호적대장』 면별·시기별 출가자의 수	12
[표 2] 1717년 『단성현호적대장』 면별 호수	13
[표 3] 『단성현호적대장』 식년별 출가자의 신분 구성	15
[표 4] 『단성현호적대장』 양인 출가자의 직역 구성	19
[부표1] 『단성현호적대장』 주호승의 식년별 추이	34
[부표2] 『단성현호적대장』 출가자 인물 정보	34
[부표3] 『단성현호적대장』 내婢 출가자 사례	40

그림 목 차

[그림 1] 17~18세기 『단성현호적대장』 식년별 출가자의 수	12
[그림 2] 幼學 출가자 정만수 가계도	17
[그림 3] 幼學 출가자 이만근 가계도	18

제 1 장 머리말

戶籍大帳(이하 호적)은 지방행정 단위별로 戶를 성책한 장부이다. 조선은 3년에 한 번씩 호구를 파악하여 군현별로 호적대장을 작성하였으며 군현이 속한 지역의 監營과 중앙의 漢城府에 보고하고 각 지방관청에 호적을 보관하였다. 호적은 國役 수취를 위한 기본 장부이며, 지방 통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중앙에서 정한 각 직역의 총액에 맞추어 호적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호적이 국가의 필요에 따라 지방의 운영 방침에 대응하여 작성된 장부라는 사실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¹⁾

호적에는 호의 대표인 主戶(=戶主)의 신상과 더불어 호내 구성원과 주호간의 가족 관계 또는 신분적 예속 관계에 놓인 구성원들의 정보를 담고 있다. 단순히 개인 신상에 그치지 않고 職役, 戶內位相, 성명, 연령, 본적, 四祖(父·祖·曾祖·外祖)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 때문에 호적대장은 중앙의 국역 수취 방식과 그 대상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주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나아가 조선시대 사회사 연구에 있어 지방사회 내부의 다양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인식되었다.

기존의 호적연구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호적대장에서 확인되는 ‘職役’이었다. 초기 연구는 호적에 등장하는 직역을 분석하여 조선 후기 신분제를 설명하는 데 집중되었다. 그 결과 ‘양반층의 격증, 상민층의 격감, 노비호의 소멸’이라는 도식이 구체화 되었다. 초기 연구에서는 이를 두고 ‘신분제의 문란’ 또는 ‘중세 사회의 해체’ 증거로 사용하여 민의 신분상승으로 신분제가 해체하면서 발생한 결과로 해석하였다.²⁾

1) 손병규, 『호적』, 서울: 휴머니스트, 2007.

2) 시카타 히로시(四方博)는 『대구부호적대장』을 분석하여 각 시기 별 主戶의 직역을 신분별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1690년 9.2%였던 양반의 비율이 1858년 70.3%까지 증가하였음이 밝혀졌다. 시카타 히로시는 양반 비율의 증가를 곧 조선 후기 신분 질서의 동요로 설명한다. 반면 해방 이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체성론을 비판하며 양반 직역의 증가를 조선 후기 사회의 발전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대두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양반호의 급증이라는 도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평민의 신분 상승을 신분제의 동요가 아닌 조선 사회의 내재적 발전으로 발생한 현상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四方博, 「李朝人口に關する身分階級的的觀察」 『朝鮮經濟の研究』 3, 1938; 김용섭, 「조선후기에 있어서의 신분제의 동요와 농지소유」 『사학연구』 15, 1963; 「양반의 연구 - 조선후기의 농

그러나 초기 연구는 직역을 곧 신분으로 이해하였다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직역이란 국가의 부세 수취 단위로 개인이 담당해야 할 부세의 부담을 표현한 것이다. 국역 부담은 당시의 신분과 철저히 분리하여 이해할 수만은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신분 단위의 집단을 매개로만 하여 부과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직역을 곧 신분으로 파악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³⁾ 특히 조선 후기 균역법의 실시로 대변되는 국역 체계의 변화에 따른 호적 본문과 都以上の 불일치는 제도적 모순을 야기하며 신분과 직역의 괴리를 더욱 심화시켰다. 따라서 균역법의 실시 이후에 호적대장 상에서 확인되는 직역은 국가의 국역 정책에 따라 변화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곧 개인의 신분 자체가 변화하는 것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한 이후 진행된 호적연구에서는 호적 상에서 나타나는 직역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였다.⁴⁾ 이들 연구는 각 직역의 변동 추이를 호적 본문과의 비교를 통해 밝혀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해당 연구는 대체로 호적 말미 均·현 전체의 통호 총수, 남녀 총수, 전식년 대비 호구수의 가감 등과 함께 신분 및 직역별 통계를 명시해놓은 도이상에 주목했다. 도이상에 나타나는 수치와 본문의 비교를 통해 중앙에서는 총액제의 형태로 지방에 국역을 부과하여 국역체계를 운영하였음이 밝혀졌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유학 직역의 수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양인직역 및 노비의 수가 급감하는 등 직역의 비율이 변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19세기 호적에서는 일정 수준의 戶總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반면, 개개인을 뜻하는 口總은 크게

가경제-』『아세아연구』8, 1961; 「조선후기 身分構成의 변동과 농지소유」 『동방학지』82, 1983; 정석중, 「조선후기 사회신분제의 변화- 울산부 호적대장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9, 1969.)

3) 손병규, 「호적대장 직역기재 양상과 의미」 『역사와 현실』 41, 2001; 『앞의 책』, 2007; 미야지마 히로시, 「조선시대의 신분, 신분제에 대하여」 『戶籍大帳에 나타나는 사람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2003.

4) 대표적으로 幼學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양반 신분층으로 이해되었던 유학(幼學)의 경우, 유학의 기재 및 증가 현상이 균역의 운영 방식에 따른 결과였음이 밝혀졌다. 호적의 도이상 통계와 본문을 비교해본 결과, 균역의 운영이 총액제 방식으로 확산되면서 균역자의 수가 유지되거나 감소하였고 그에 반해 유학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손병규, 「호적대장 직역란의 균역 기재와 ‘都以上’의 통계」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송양섭, 「18-19세기 단성현의 균역파악과 운영-『단성호적대장』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4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19세기 유학층의 증가양상-『단성호적대장』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5, 한국역사연구회, 2005.)

감소한 현상이 균역의 부과 방식에 따른 결과임이 밝혀졌다. 균역이 개별적 부과방식에서 공동납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호종의 확보가 개인의 총수보다 우선시 되었고, 그 결과 개인의 직역이 이전보다 중요하지 않게 됨에 따라 자연스레 특정 직역층이 증가한 것이다.⁵⁾ 다시 말해서, 직역별 변동 추이의 원인이 사회적 혼란이 아닌 국가의 부세 정책 및 균역 체계의 변화에 따른 결과임을 강조하였다.⁶⁾

호적에 기재된다는 것은 곧 국가에서 부과한 役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주목할만한 것은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僧이 새로운 직역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僧은 전통적으로 役에서 면제되는 집단으로 인식되었다. 조선 건국 초부터 지속적으로 民이 피역을 목적으로 출가를 선택하고 있다는 데서 이러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⁷⁾ 그러나 17세기 후반, 윤희의 건의로 僧의 호적 등재가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僧은 공식적으로 국가에 의해 役을 지는 존재로 받아들여졌다.⁸⁾ 중앙에서는 僧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찰을 面 단위로 취급한 후, 僧을 별도로 구성한 형태의 호적을 작성하였다.⁹⁾

호적에 등장하는 僧에 대한 연구들은 사찰조를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단성·대구·울산의 僧戶 호구수와 신분 구성이 수치화되었으며 대부분의 僧이 양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다.¹⁰⁾ 이들 연구는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의 주요 논지로 작용하였던 승유역불 논리¹¹⁾를 비판함과 동시에 실제 僧의

5) 송양섭, 「19세기 유학호의 구조와 성격-『단성호적대장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4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4.

6) 호적 연구 동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아래를 참조. 노영구, 「단성호적의 사료적 성격 : 조선후기 호적대장 연구현황과 전산화의 일례」 『대동문화연구』 3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권기중, 「조선후기 호적 연구의 현재와 향후 과제」 『대동문화연구』 10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7.

7) 『태조실록』 권 7, 태조 4년(1395) 2월 10일 계미; 『세종실록』 권 36, 세종 9년(1427) 6월 10일 정묘.

8) 『숙종실록』 권 3, 숙종 1년(1675) 5월 9일 정묘.

9) 본 논문에서는 僧戶만을 별도로 구성한 호적을 ‘사찰조’라고 통칭한다. 실제 호적에서는 ‘○面○寺佛堂居士’ 또는 ‘○面○○寺’로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승호를 별도로 호적대장에 명시되어 있다.

10) 장경준,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승려 등재 배경과 그 양상」 『대동문화연구』 5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손성필, 「조선시대 승려 팔천신분문의 재검토」 『보조사상』 40, 2013; 「조선시대 불교사 자료의 종류와 성격」 『불교학연구』 39, 불교학연구회, 2014; 이종서, 「조선 후기 울산 지역 불교사찰의 호구와 사세의 변동」, 『역사와 경제』 96, 부산경남사학회, 2015.

신분 구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위 연구들은 분명한 한계를 지니기도 한다. 18세기를 거치며 감소하는 僧戶의 호구수가 변화한 현상의 원인을 僧에게 부과된 과중한 역에서만 찾았다는 점이다. 이는 호적이 기본적으로 중앙의 국역 체계에 호응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로 이해된다. 실제 18세기 호적의 전체 호구수와 僧戶의 호구수는 비슷한 양상을 띄며 감소하고 있다. 이는 당시 시행되었던 양역변통·균역법 등의 정책과 관련이 깊다.

이후 僧役 연구가 보다 진행됨에 따라 국가 운영의 관점에서 僧役을 그려낸 연구가 진행되었다.¹²⁾ 이 연구에서는 僧이 조선 후기 호적에 등재됨으로써 제도화된 역의 체계 내로 편입되었던 과정과 승역의 운영 방식에 주목했다. 이에 중앙이 국역을 부과하려는 의도에 따라 僧이 호적에 등재되었고 그에 따라 僧戶의 구성 및 호구수가 변동하였음을 밝혔다. 이 연구는 僧役을 더 이상 국가의 수탈이 아닌 국역 정책에 따른 변화로 이해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호적에 등장하는 僧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대부분의 연구가 사찰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된다. 사찰조는 이미 僧이 된 자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사찰조에 등장하는 僧의 대부분은 실제 役을 부담하는 양인층에 국한되어 나타났다. 그 결과 출가 전 僧의 직역과 신분에 나타나는 다양한 면모를 면밀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발생한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중앙의 국역 체계가 어떤 계층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 僧의 신분은 어떠했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앞선 僧戶 연구들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호적은 役 수취를 위해 필요한 인원만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찰에 역을 부과하기 위해 별도로 작성한 사찰조는 僧

11) 조선시대 불교사 연구는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일본 불교의 조선 포교를 정당하기 위해 조선이 불교를 배척하였다는 ‘승유역불’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 조선 불교는 부녀자·천민만이 신봉했다는 주장, 조선의 僧이 八賤신분 중 하나였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아오야나기 난메이(靑柳南冥), 『朝鮮宗教史』, 조선연구회, 1911; 후루타니 기요시(古谷清), 『朝鮮李朝佛敎史梗概』, 『불교사학』, 1912; 이마니시 류(今西龍), 『朝鮮佛敎關係書籍解題』, 『불교사학』, 1930;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 『李朝佛敎』, 寶文館, 1929.)

12) 김선기, 「조선후기 僧役의 제도화와 운영 방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으로 기록된 개개인을 살펴보는 데 적합하지 않으며 사찰조와 호적 본문상 출가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한계점도 지적된다.

또한 지금까지의 僧役 연구는 僧의 출가 원인을 국역 체계의 흐름 하에 설명함으로써 사찰조에 나타나는 양인의 증·감소 원인 중 하나로 양인의 避役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출가자의 직역 및 가계에 대한 분석 없이 단순히 양인의 출가를 피역과 연결 짓는 것은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피역을 목적으로 한 양인의 출가를 호적에 어떤 방식으로 기재하였는지에 대한 의문과는 별개로 실제 『丹城縣戶籍大帳』 본문에 등장하는 출가자 중 상층 직역을 칭하는 출가자가 일부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僧으로 나타나는 개인에 주목하여 『단성현호적대장』을 중심으로 僧의 존재 양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호적대장 본문 내에서 나타나는 출가자에 집중함으로써 실제 僧이 된 인물의 신분 구성 및 경향성은 어떻게 되는지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장에서는 僧이 호적에 등재되는 과정을 살핌으로써, 국가에서 僧을 국역 자원의 하나로써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살핀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본 배경을 바탕으로 실제 『단성현호적대장』에서 보이는 출가자의 존재 양상을 밝힌다. 이를 위해 우선 3장 1절에서는 출가자의 시기별 추이를 살폈다. 이때 사찰조와 본문의 비교를 통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장 2절에서는 사례 분석을 통하여 출가한 인물의 직역 및 가계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사찰조에서 확인할 수 없는 僧의 구체적인 신분 구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단성현호적대장』을 주 자료로 활용하여 17~18세기 단성현의 출가자를 정리하였다.¹³⁾ 또한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등의 자료를 통해 당시 국가의 僧役 운영 양상 및 인식을 살펴보았다.

13) 『丹城縣戶籍大帳』은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전산화한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으며, 자료 누락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丹城縣戶籍大帳』 원문과의 교차 검증을 진행하였다. (원문은 『丹城縣戶籍大帳』, 韓國精神文化研究院, 2001 참고)

제 2 장 僧의 호적 등재와 구성

僧이 된다는 것은 어떤 신분이나 직업으로 구분되지 않고 세속을 떠나는 의미를 가진다. 이 때문에 승은 전통적으로 免役의 대상이 되었으며 속세, 즉 국가의 법 밖에 있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다.¹⁴⁾ 그러나 모든 民이 役을 지는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던 조선에서 이러한 성격이 관철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僧은 免役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승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役을 질 수 있는 民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가는 필연적으로 이들을 관리·통제함으로써 자격을 갖춘 일부 사람들만을 度牒僧으로 인정하여 役에서 면제하고자 하였다.¹⁵⁾ 이에 도승의 규정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한편, 도첩을 받지 않은 무도첩승에 대한 처벌도 『經濟六典』에 함께 기재해놓은 것으로 보인다.¹⁶⁾

국가는 도첩승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僧에게 일부 役 형태의 노동력을 징발하기도 하였다. 무도첩승을 대상으로 국가 주도의 토목 공사에 동원하기도 하였으며 각종 잡역에 僧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이때 토목 공사 등에 동원된 무도첩승에게는 양식이 지급되거나 도첩이 발급되었다. 무도첩승에게 도첩을 발급해줌으로써 이들을 일정 부분 有役人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함께 僧은 종이 제작 등의 잡역에도 활용되었다. 종이 제작은 승에게 부과되는 가장 대표적인 役이었다.¹⁷⁾ 사찰은 관아로부터 종이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받아 경내에서 종이를 제작한 이후 이를 관아에 공납하였다. 그 외에도 僧은 메주 생산, 두부 생산 등을 담당하며 해당 군현의 관아에서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역할을 맡았다. 僧이 공납 형태의 役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⁸⁾

14) 양혜원, 「조선초기 법전의 '僧'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2

15) 『세종실록』 권 10, 세종 2년(1420) 11월 7일 신미.

16) 양혜원, 앞의 글, 2017.

17) 『세조실록』 권 3, 세조 2년(1456) 3월 5일 갑술.

18) 僧이 담당하였던 잡역에 대한 연구는 이성임, 「16세기 지방군현의 입역체제와 승려의 부역」

僧에게 요역 형태의 부역이 부과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중반부터이다.¹⁹⁾ 1555년(명종 10) 을묘왜변을 거치며 승군을 조발하여 전쟁에 투입할 것이 제안된 것이다.²⁰⁾ 이로써 지방 군현의 수령에게 승군을 조발하여 전쟁에 참여시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승군의 활약은 양란을 거치며 지배층에게 僧이 役을 질 수 있는 존재임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양란 당시 僧이 군량 수송 및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공을 세우자 국가의 방비 체제를 논의할 때 승군의 활용 방안이 함께 고려되기 시작한 것이다.

선조는 공을 세운 승에게 선과첩을 지급하고 승군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였다.²¹⁾ 僧은 본격적으로 산성 축조와 산성 방어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僧은 둔전 경작과 군사 훈련에 동원되었으며, 축성 뿐 아니라 군비 확충, 군기 제작, 군사 훈련 등의 각종 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임진왜란을 거치며 僧을 군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정립된 것이다. 특히 僧을 활용하여 산성을 수축·방비하는 것이 국가의 정례가 되었다. 산성 내부에는 사찰을 조성해 승군이 머물 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며, 승군에게는 잡역을 면제시켜 산성의 수호를 전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僧에게는 義僧이라는 역할이 부여됨과 동시에 의승역의 운영 방식 또한 정립되었다.²²⁾ 17세기 중반 이후 남한산성 의승 액수는 총 400명으로, 1년에 6차례 남한산성에 立番하였다. 이들은 總攝의 주관 하에 각 사찰마다 정해진 구역을 수호하고 퇴락한 성을 보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²³⁾ 남한산성에 주기적으로 입번·수직하는 의승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6

『한국불교사연구』 8, 한국불교사연구소, 2015; 「16세기 안봉사의 사찰잡역고 -이문건의 『묵재일기』를 중심으로-」, 『嶺南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0. 참고.

19) 윤용출, 「조선후기 僧役의 변동과 金井山城」, 『한국성곽학보』 6, 한국성곽학회, 2004; 민순의, 「요역의 관점에서 본 조선 초 僧役의 이해 : 도첩제도의 정비와 관련하여」, 『종교문화비평』 39,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21.

20) 『명종실록』 권 18, 명종 10년(1555) 5월 18일 신해; 『명종실록』 권 18, 명종 10년(1555) 5월 20일 계축; 『명종실록』 권 18, 명종 10년(1555) 5월 26일 기미.

21) 禪科帖은 임진왜란 당시 공을 세운 승에게 수여한 것으로 도첩과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선조는 일본군의 수급을 배어 바친 승군에게 선과첩을 지급하였다. 이때 도총섭 휴정이 비변사에 군공을 보고하면 이에 맞춰 선과첩이 발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2) 『비변사등록』 권 10, 인조 24년(1646) 7월 4일 무신.

도의 승을 대상으로 상변군의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전 시기까지 산발적으로 동원되던 승군이나 공납 형태로 부과되던 지역 등의 잡역과는 달리 국가가 승에게 일종의 군역과 유사한 역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일반 양인에게 부과되던 군역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군역이 개별 인신을 단위로 부과되었다면, 의승은 분정되는 단위가 사찰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승역의 실제 부담 양상을 보면 사찰 내 승 중에서 일부 승은 직접 산성으로 상변하고 그 외의 승은 상변에 요구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역의 부담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⁴⁾ 이와 같은 정황은 정군과 보인으로 구성된 일반 군역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또한 의승역의 정립으로 지방 군현에 새로운 상납 세목이 생성되면서, 각 군현에서는 정해진 액수만큼의 의승을 산성으로 보내야만 했다. 이때 상변의 주체가 되는 것은 지방 군현의 수령이었는데 이는 곧 승(의승)을 대상으로 사찰로부터 지방 군현을 거쳐 중앙 정부로 이어지는 일련의 체계가 확립되었음을 시사한다.²⁵⁾ 즉, 의승의 등장과 정립은 국가가 僧과 사찰을 관리·운영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셈이다.

17세기 중반을 거치며 僧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미 세종대 승의 錄籍과 세조 대 호패 발급이 이루어지며 僧을 파악하고자 한 시도는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일시적인 시도였을 뿐, 중앙 차원에서 개개인의 僧을 파악하고자 한 시도는 존재한 적 없었다.

이에 1675년(숙종 1) 윤희에 의해 승의 호적 등재가 논의되기 시작했다.²⁶⁾ 윤희는 이전까지 호적에 등재되지 않았던 僧들을 본향의 호적에 등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윤희의 이러한 발언이 주목되는 것은 僧의 호적 등재 논의가 호적의 오가작통과 함께 발언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가작통제는 5가를

23) 『승정원일기』 권 168, 현종 2년(1661) 6월 17일 갑오.

24) 김선기, 앞의 논문, 2023, p.73

25) 『승정원일기』 권 116, 현종 1년(1660) 11월 9일 기미.

26) 『숙종실록』 권 3, 숙종 1년(1675) 5월 9일 정묘.

1통으로 하여 통수를 설치하고 이를 면리 체계의 하부에 편입시키는 조치였다. 이러한 조치를 바탕으로 국가는 지방 촌락까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양역 자원을 확충하고자 하였다.²⁷⁾ 즉, 양란을 거치며 양역 자원의 확보가 시급했던 상황과 결부되어 僧을 役의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들을 호적에 등재시키고자 한 것이다.

호적은 국가에서 役 수취의 대상이 되는 개인을 파악하고자 작성한 장부이다. 이때 호적에서 파악하는 役은 개인에게 부과된다. 이 때문에 僧이 호적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은 국가가 僧을 공식적인 役 체계에 포함시켰다고 이해할 수 있다. 마침내 1678년(숙종 4) 僧役이 국역화 된 것이다.

이전까지 사찰을 단위로 부과하던 僧役이 국역화되고 僧을 개별 인신으로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僧의 호적 기재 방식 또한 정립되었다. 이때 호적에 기재되는 僧은 두 부류로 나뉜다. 첫째, 僧에게 役을 부과하기 위해 사찰을 面 단위로 취급하여 작성된 호적(사찰조)에 등장하는 僧이다. 이들은 이미 출가하여 僧이 된 인물로 각 사찰에 소속되어 役을 지는 有役人으로 기재된 인물들이다.

A-1. 良僧天熙年參拾柒乙酉本慶山 父正兵金大○ 母良女魏召史本大丘 率
上佐良進會改名廣憲年貳拾壹辛丑 (『단성현호적대장』, 1681)

A-2. 僧國察年伍拾肆丙戌本清州 父兼司果韓時同 祖納通政大夫順奉 曾祖
正兵麻堂 外祖正兵李文尙本慶州 丙子戶口相準
(『단성현호적대장』, 1759)

단성현의 경우 1678년부터 僧의 존재가 확인된다. 현존하는 호적대장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이다.²⁸⁾ A는 『단성현호적대장』에서 僧戶로 나타나는 戶의 기재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A-1은 良僧 천희(天熙)의 戶이며, A-2는 僧 국찰(國察)의 戶이다. 주목할

27) 권내현, 「숙종대 지방통치론의 전개와 정책 운영」, 『역사와 현실』 25, 한국역사연구회, 1997.

28) 대구의 경우 1681년(숙종 7), 울산의 경우 1684년(숙종 10)부터 승호의 존재가 확인된다. 대구는 단성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승호를 구성하고 있지만, 울산의 경우 단성·대구와 달리 승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사찰이 위치한 면리를 기준으로 일반 민호와 함께 작성하였다. (장경준, 위의 논문, 2006)

만한 것은 1681년 主戶의 성명 앞에 기재된 ‘良僧’, 즉 신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1759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기에 따라 기재 양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인데, 승호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8세기 초반까지 良人僧·良僧·私奴僧 등 僧 앞에 직역 및 신분이 기재되는 반면, 18세기 중반부터는 A-2의 사례처럼 良人·私奴 등의 표현이 사라지고 主戶의 직역이 모두 僧으로 통일되었다. 또한 主戶에 예속되어 있던 上佐가 사라지고 主戶의 四祖가 생략되는 등 호적 기재 양상이 단순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호적 본문이 단순화되는 경향과도 유사한데, 18세기 부세 파악 방식이 정액화됨에 따라 발생한 현상으로 생각된다.

아래 B는 『단성현호적대장』에서 출가자가 포함된 일반호의 기재 사례이다.

B. 驛卒金坪屎年參拾壹戊子本南原父驛吏春山祖驛吏莫男曾祖驛吏貴萬外
 祖驛吏金生男妻驛女金召史年參拾球庚辰本昌原父正兵孫卜祖正兵億卜
 曾祖正兵億夫外祖水軍白大輝率子孫萬爲僧子富貴年捌辛亥雇工李奉晉
 州移居乙卯戶口相準加現率母金召史年陸拾壹戊午率子長守年陸癸丑戊
 午自首
 (『단성현호적대장』, 1678)

B에 나타난 출가자의 戶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主戶인 김평시(金坪屎)의 직역은 驛卒이다. 김평시의 당시 연령은 31세이며 그의 四祖는 모두 驛吏였다. 그의 妻는 驛女 김소사로 연령은 39세이다. 가족 관계를 확인해보면 김평시에게는 孫萬과 富貴 두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손만의 이름 뒤에 기재된 ‘爲僧’이라는 표현을 통해 1678년 손만이 출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A와 B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우선 僧戶의 기본적인 기재 방식 또한 일반호의 기재 방식을 따른다는 것이다. 主戶의 성명과 나이, 본관, 四祖의 직역 및 성명을 기재하는 것은 일반호의 기재 방식과 같다. 그러나 그 외의 기재 방식에서는 승호와 일반호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승호를 통해서 해당 僧의 출신 및 혈연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일반호에는 주호를 비롯한 戶의 구성원들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戶의 출신 및 경제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지만, 승호를 통해서도 儻 개인에 대한 양상을 밝힐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단성현호적대장』 본문에 등장하여 일반호에 소속된 출가자의 정보를 통해 이들이 어떤 양상을 띄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제 3 장 호적 내 僧의 존재 양상

제 1 절 승의 시기별 추이

『단성현호적대장』에 등장하는 출가자의 수는 총 129명이다. 아래 <표 1>과 <그림 1>은 17~18세기 단성현에서 출가한 인물들의 면별·시기별 분포이다.

<표 1> 17~18세기 『단성현호적대장』 면별·시기별 출가자의 수

	도산	법물야	북동	생비량	신등	오동	원당	현내	합계
1678	2		2				2		6
1717	1	1		2			1		5
1720	2	1		2	1	2	1	5	14
1729	4	2	5	5	2	3			21
1732	2	2	2	4	1	2	1		14
1735	3	4		5	1	1	1		15
1750	5	1	9	1	1		1	2	20
1759	1	4				1			6
1762	1	2		5	2				10
1780	2	3		1	1			2	9
1783		1	1	3	2				7
1786						1			1
1789		1							1
합 계	23	22	19	28	11	10	7	9	129

<그림 1> 17~18세기 『단성현호적대장』 식년별 출가자의 수



먼저 면별 출가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도출해낼 수 있다. 첫째, 단성현에서 가장 많은 출가자가 등장하는 지역은 생비량면이다. 전체 129명 중 약 22%에 해당하는 28명이 생비량면에서 출가하였다. 이는 당시 단성현의 지역적 특징과 연관이 깊다. 18세기 초 『단성현호적대장』의 면별 호수를 함께 살펴보자. 이를 통해 생비량면에서 다수의 출가자가 등장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표 2〉 1717년 『단성현호적대장』 면별 호수

계층/면	도산	법물야	북동	생비량	신등	오동	원당	현내	합계
상층호	92	47	60	27	75	41	104	54	500
중층호	166	239	196	300	139	123	187	270	1,620
합 계	258	286	256	327	214	164	291	324	2,120

- 노비호를 제외한 양인호만을 기준으로 함
- 상층호 : 유학호 등 양반 직역자의 호 / 중층호 : 그 외 일반 군역자의 호
- 김성희·박용숙, 「18세기 社會構造-경상도 丹城縣의 경우」, 『역사의 세계』 3, 부산대사학회, 1979 참조.

단성현에서 가장 많은 호수를 보유한 면은 생비량면이다. 이에 자연스럽게 출가자의 비율 또한 생비량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면별 호구수의 추이는 원당면 출가자의 비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원당면의 경우 전체 130명 중 5.4%인 7명의 출가자가 등장한다. 다른 면에 비해 비교적 적은 수의 인원이 출가한 것이다. 그러나 원당면의 호구수는 단성현의 다른 면과 비교하였을 때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인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때 원당면의 상층호 비율이 주목된다. 원당면은 상층호의 비율이 다른 면에 비해 높았던 지역이다. 이에 호구 대비 일반 양인의 출가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단성현 출가자 중 奴婢 출가자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상층호가 많았던 원당면과 도산면에서 다수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⁹⁾

29) 17~18세기 『단성현호적대장』 면별 奴婢 출가자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다음으로 식년별 특징을 살펴보자. 위 <표 1>을 통해 시기별 두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단성현 출가자의 수는 18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 전체의 79.7%, 즉 106명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둘째, 18세기 중반부터 儻의 수는 큰 변동 없이 고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호적에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은 비단 출가자의 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³⁰⁾ 이는 당시 군역 정책에 따라 호적이 작성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조선은 1713년(숙종 39)과 1714년(숙종 40)에 걸쳐 지방 군현에 소속된 군현에 대한 정액화를 실시하였다.³¹⁾ 양란을 거치며 감소하였던 양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의 노력은 곧 지방 군현의 役總으로 이어졌다. 단성현의 경우에도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전반 역총이 이전 시기에 비해 상승하였는데 출가자의 수 또한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17세기 전반의 양역확보책과 더불어 18세기 중반 『양역실총』이 간행됨에 따라 호구수가 감소·정액화된 영향도 시기별 출가자의 추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즉, 『단성현호적대장』 일반호의 시기별 변화추이는 당시 중앙의 국역 정책이 반영된 결과였던 것이다. 적어도 18세기 후반까지는 국가의 국역 정책 아래 儻이 파악·관리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단성현호적대장』에 나타나는 출가자의 면별·식년별 추이를 살펴 보았다. 儻이 호적에 등재된 이상, 이들 또한 국가에 의해 役을 부담하였다는 존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가자의 추이에 당시의 양역 정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해진다. 특히 民의 출가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避役 문제가 18세기 중반 균역법의 시행으로 일부 감소하였다는 사실도

계층/면	도산	법물야	복동	생비량	신등	오동	원당	현내	합계
奴婢	10	4	4	2	3	2	6	3	34

30) 동일한 시기 儻戶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식년	1678	1717	1720	1729	1732	1735	1750	1759	1762	1780	1783	1786	1789	합계
호수	65	49	58	58	31	23		36	36	37	37	37	36	511

* 1750년 사찰조 확인 불가

31) 손병규, 「18세기 良役政策과 지방의 軍役運營」 『군사』 39, 국방군사연구소, 1999.

18세기 중반 이후 출가자의 감소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³²⁾ 그러나 출가의 원인을 오로지 당시의 국역 정책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17세기 전반 僧戶에 등장하는 私奴僧의 경우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출가자는 단순히 役의 대상이 되던 양인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僧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출가자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인물들이 출가하였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제 2 절 僧의 신분 구성

〈표 3〉 『단성현호적대장』 식년별 출가자의 신분 구성

식년	1678	1717	1720	1729	1732	1735	1750	1759	1762	1780	1783	1786	1789	합계
良	4	3	7	19	11	11	12	3	9	8	7	1	1	96
賤	2	2	7	2	3	4	8	3	1	1	-	-	-	33
합계	6	5	14	21	14	15	21	6	10	9	7	1	1	129

* 양인 중 1732년과 1762년에 幼學 직역의 출가자가 확인됨

위 〈표 3〉은 각 식년별 『단성현호적대장』에 등장하는 출가자의 신분을 良·賤으로 분류한 것이다. 출가자가 등장하는 식년의 전후를 비교하여 해당 인물과 부모, 四祖 및 주호의 직역을 고려하여 양·천을 구분하였다.³³⁾ 이를 통해 17~18세기에 걸쳐 출가한 129명 중 양인이 96명(74.4%) 천민이 34명(25.6%)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 단성현에서 출가한 인물들은 어떤 직역을 칭하고 있었을까. 출가자의 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식년과 더불어 이전 식년 및 이후 식년의 호적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출

32) 1750년(영조 26) 균역절목청이 설치되고 이것이 이듬해 균역청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2필의 군포가 1필로 감소하였다. 균역법은 양역의 부담을 최소로 하는 조치로써 실제로 중앙에서는 良人의 출가가 감소한 이유를 균역법의 시행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영조실록』 권 74, 영조 27년(1751) 11월 26일 무자.)

33) 良女의 경우 양역자의 증가를 위해 중앙에서 양녀와의 사이에서 난 자녀를 양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良人으로 구분하였다. (양녀에 관한 연구는 김경란,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양녀(良女)” 기재실태와 성격 - 『단성현호적대장』을 중심으로 -, 『조선시대사학보』 29, 조선시대사학회, 2004. 참조.)

가자의 직역을 출가한 식년의 전후 식년을 비교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해당 식년에 직역이 僮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직전 식년과 직후 식년의 비교를 통해 출가자의 직역을 설정하였다. 직전 식년과 직후 식년의 직역이 상이한 경우에는 직전 식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해당 식년에 직역이 僮 외의 직역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출가한 당시의 직역이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먼저 73.8%에 해당하는 양인 출가자에 대해 살펴보자. 양인 출가자 98명 중 먼저 주목되는 것은 幼學 직역의 출가자이다. 幼學은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양반층이 가지는 직역으로, 일반적으로 군역에서 제외되었다. 달리 말해서, 군역에서 제외되었던 계층이 군역을 지는 僮이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단성현호적대장』에서 나타나는 幼學 출가자는 어떤 인물들이었을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幼學 출가자의 父母와 四祖를 분석하여 해당 인물의 동향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단성현호적대장』에는 총 두 명의 幼學 출가자가 확인된다. 두 사람 모두 출가 당시 父의 직역이 幼學이며 母의 호칭은 氏이다. 출가자와 그의 가족의 직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幼學 출가자 정만수 가계도



1735년 원당면에서 출가한 정만수(鄭萬壽)는 출가 직전인 1732년 幼學으로 등장한다. 1735년 호적에서 정만수의 아버지는 본문 훼손으로 파악이 되지 않지만, 바로 직전 식년인 1732년 호적에 정만수와 그의 아버지 정중연(鄭重延)의 호가 확인된다. 정중연은 1717년부터 1720년까지 禁衛凌磨³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732년 호적에서는 幼學을 칭한다. 군관직에서 유학으로 직역 변동이 발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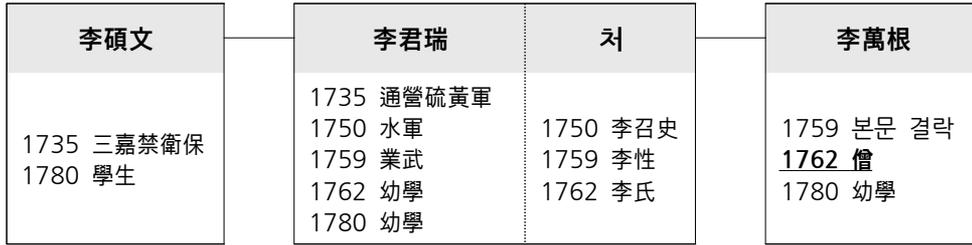
정중연의 직역 변동과 동시에 정중연 형제들의 직역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1729년 禁衛保로 기재된 정중연의 형 정중해(鄭重海)는 1732년 幼學으로 등장하며 1729년 業儒였던 동생 정중재(鄭重載)는 1732년 幼學으로 등장한다. 1729년 호적에서는 세 형제 모두 각기 다른 직역을 가지고 있었지만, 1732년에 이르러 모두 幼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중연의 직역 변동에

34) 能磨兒廳은 1629년(인조 7) 설립된 것으로 1882년(고종 19)까지 존속하였다. 병서의 고강과 권장을 관장한 관청이다.

(정해은, 「조선 정조 대 훈련원 정비의 방향과 그 의미 - 1797년의 〈훈련원절목〉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88, 호남사학회, 2022.)

따라 그의 妻이자 정만수의 어머니인 서씨 또한 기재 방식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 1729년까지 서소사(召史)로 등장하던 그는 1732년 호적에 이르러 서씨(氏)로 호칭이 변경되었다. 이를 통해 1732년을 기점으로 정중연을 비롯하여 이들 가계에 직역 상승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幼學 출가자 이만근 가계도



1762년 생비량면에서 출가한 이만근(李萬根)의 해당 식년 직역은 僧이다. 1762년 호적이 작성되기 전에 출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만근의 아버지인 이군서(李君瑞)는 1762년 이전에는 군관직을 역임하였으나 1762년에는 幼學으로 등장하며, 그에 따라 그의 妻이자 이만근의 어머니도 소사에서 氏로 호칭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만근은 그 이전에는 직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1780년 호적에 幼學으로 등장하고 있어 아버지의 직역이 변경됨에 따라 아들인 이만근 또한 직역이 변화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상 두 명은 『단성현호적대장』에 나타나는 幼學 직역자의 출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렇다면 幼學으로 나타나는 상층 직역자를 제외한 양인 계층의 출가자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을까. 『단성현호적대장』에서 확인되는 양인 출가자의 직역을 구분하면 다음 〈표 4〉과 같다.

〈표 4〉 『단성현호적대장』 양인 출가자의 직역 구성

구분	1678	1717	1720	1729	1732	1735	1750	1759	1762	1780	1783	1786	1789	합계
校生						1								1
武學				1			1							2
業儒					1									1
院生				1										1
驛吏	1		1											2
良軍官											2			2
馬兵							1							1
保			3	3	4	1	4		4		3		1	23
水軍				1	1					1				3
陸軍									1					1
炊飯軍				1										1
採藥軍									1					1
匠		1		1	1	1								4
雇工	1													1
齊直			1											1
病人			1											1
不明	2	2	3	8	4	7	7	4	2	6	2	1		48
합계	4	3	7	19	11	10	12	3	8	8	7	1	1	94

* 保 : 束伍保·星州砲保·水井保·水保·驛吏李必保·醫生保·驛保·宜寧刻手保·樂工保·禁衛保·
 晋州御營保·騎保·京案保·禦營保·驛保·烽燧保·內軍官保·驛保·形房保·藥保

단성현 양인 출가자의 직역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양인 상층의 경우이다. 校生·武學·業儒·院生·驛吏·良軍官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일반 군역층의 경우이다. 馬兵·保人·匠人·軍 등이 이에 해당하며 마지막 雇工·齊直·病人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단성현호적대장』에서 직역이 확실하게 파악되는 경우는 총 46명이다. 그 외 48명의 경우에는 직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가장 먼저 양인 직역 중 상층에 해당하는 校生³⁵⁾과 武學³⁶⁾ 직역 출가자의 사례를 확인해보자.

1735년 법률야면에서 출가한 이맹연(李孟延)의 출가 직전 직역은 校生이다. 14세의 나이로 출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맹연의 아버지인 이수태(李守太)는 1720년 碧溪驛姜碩達保로 기재되었다가 1729년 納嘉善으로 등장한다. 납속³⁷⁾을 받은 후 직역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맹연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들의 직역은 이수태가 납속 받은 후부터 校生으로 기재되기 시작했다. 출가한 이맹연과 그의 동생 이맹의 모두 校生으로 등장하며, 1750년 호적부터는 이들의 戶가 확인되지 않는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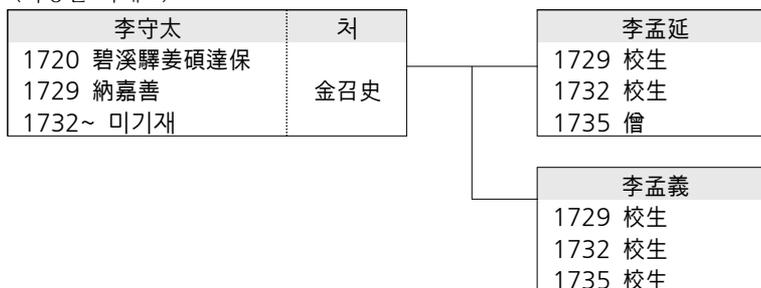
이맹연의 사례 또한 앞선 幼學 직역의 출가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직역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732년(영조 8) 비변사에서 제정한 절목을 확인해보면, 면역의 기준이 되는 최소 납속량이 10석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⁹⁾ 幼學 직역자의 가계가 일반 양인 중에서도 상층 직역을 칭하

35) 校生은 다양한 신분·계층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지역에 따라 양반이 교생을 칭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양반 외 양인으로 확인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校生을 상층 직역인 幼學과 일반 균역을 지는 중층 직역의 중간에 해당하는 양인 상층으로 분류하였다. (이준구, 앞의 책, 1997, p.27)

36) 武學은 원래 역을 지지 않는 직역이었으나 17세기 중반에 이르러 正木 二定의 역을 부담하기 시작했다. 이에 양인 상층으로 분류하였다. (이준구, 앞의 책, 1997, p.27)

37) 納粟은 임진왜란을 거치며 事目이 제정됨으로써 실시되었다. 납속층은 일정량의 납속을 통해 免役을 피하였다. (서한규, 「영·정조대 납속제도의 실시와 납속부민층의 존재」, 『조선사연구』 1, 조선사연구회, 1992; 「조선 선조·광해군대의 납속제도 운영과 그 성과」, 『역사교육논집』 20, 역사교육학회, 1995.)

38) <이맹연 가계도>



39) 10석 이상은 3년간 烟役을 勿侵하고 50석 이상인 경우 納粟通政帖을 성급한다. (서한규, 앞의 논문, 1992, p.296 참조.)

고 있었다면 이맹연의 경우 납속을 통해 역을 면제받을 만큼의 경제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729년 오동면에서 출가한 김정삼(金丁三)의 출가 직전 직역은 晉州武學이다. 김정삼의 父 김해운(金海云)은 病人으로 나타난다. 이전 식년들에서는 이들의 戶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바로 다음 식년인 1732년에는 김해운의 戶가 확인된다. 이때, 김해운은 良病人으로 기재되어 있다. 김정삼의 경우, 출가자 본인과 父의 직역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四祖의 직역을 함께 살펴보자.

1729년 김정삼이 출가하던 해, 김정삼의 祖父 기천(己天)의 직역은 業武이다. 曾祖 충신(忠信)의 직역은 老職嘉善大夫로 기재되어 있다. 1732년에도 이들은 각각 業武와 老職嘉善大夫로 등장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業武는 양인 상층에 해당하는 직역으로 분류된다. 또한 주목할 것은, 김해운의 戶에 노비가 한 명 소속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1732년 김해운의 戶에는 雇工 정립(正立)이 등장한다. 정립의 직역은 奴인데, 같은 면에 거주하던 步保 임봉창(林鳳徵)의 戶에 예속된 노비이기도 하였다. 김해운의 戶에 소속된 雇工이 戶去하여 임봉창의 戶에 기재된 것이다.⁴⁰⁾

1783년 출가한 황덕재(黃德才)의 출가 당시 직역은 僮이다. 직전 식년인 1780년에는 良軍官으로 등장한다. 황덕재가 良軍官으로 등장하는 시기 황덕재의 父 황중빈의 직역은 業武로 그 역시 양인 상층 직역을 칭하고 있다. 또한 황덕재의 祖父인 황만보의 직역은 判官, 증조인 황수첨의 직역은 秉節校尉이다. 이를 통해 김정삼의 가계와 황덕재의 가계 모두 일반 양인 직역의 가계보다는 나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상으로 유학 및 양인 상층 직역자의 출가를 살펴보았다. 이들 가계는 양반은 아니지만, 양반에 준하는 계층으로 이해된다. 특히 군관직에서 18세기 전반에 걸쳐 다수의 출가자가 등장한 것이 주목된다. 군관직을 가진 출가자가 다수 등장하였다는 사실은 僮이 되는 원인을 단순 피역으로만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군관직은 일반 군역이 아닌 군역대상자를 관리·통솔하는

40) <김정삼 가계도>

金海云	처	金丁三
1729 病人	1729 鄭召史	1729 晉州武學 (出家)
1732 良病人	1732 鄭召史	

임무를 담당하였고 이 때문에 양반과 양인 직역 사이의 직역으로 이해된다. 또한 더 나아가 이후 유학 직역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⁴¹⁾ 이들이 단순히 피역을 목적으로 출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단성현 출가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직역은 일반 군역층이다. 그 중에서도 保人은 일반 군역층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직역이기도 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水并保·水保·御營保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35년 법물야면에서 출가한 것으로 보이는 윤처삼(尹處三)은 형 윤일삼(尹日三)의 戶에 소속되어 있다. 윤일삼은 1735년 水保로 등장하며, 윤처삼은 僮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윤처삼의 이전 직역은 바로 직전 식년인 1732년 호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732년 당시 윤처삼의 직역은 禁衛保로, 29세의 나이로 출가하였다. 1735년 출가한 이후로는 『단성현호적대장』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1783년 생비량면에서 출가한 임중손(林仲孫)의 출가 직전 직역은 내군관보(內軍官保)이다. 그의 아버지 임정인(林廷仁)은 業武로, 직전 식년인 1780년에는 老人으로 기재되어 있다.

1783년 신등면에서 출가한 정상우(鄭尙右) 또한 아버지인 정재중(鄭再中)이 業武로 등장한다. 정상우의 출가 직전 직역은 역보이며 정재중은 1783년과 마찬가지로 業武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정재중의 경우 1762년에는 약보로 기재되어 있어 1762년과 1783년 사이 직역 변동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상우의 형 정상원(鄭尙元)의 직역 변동이 주목된다. 정상원은 1762년 어보로 등장하며 1783년에는 良軍官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1786년 호적을 살펴보면 정상원의 직역이 幼學으로 상승한다. 정상우가 출가한 이후 가계 내 직역 변동이 이루어졌진 것이다.

정상우의 사례처럼 출가자 본인이 일반 군역자를 칭하더라도 父 또는 兄弟의 직역이 軍官 또는 업무와 같은 양인 상층 직역을 칭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들 또한 중상층 직역과 마찬가지로 水保와 같은 保人층

41) 이동규, 「조선후기 군관직역자 연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가계보다는 나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같은 일반
군역층 일지라도 다양한 계층에서 출가자가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인 계층에서 다양한 직역자가 출가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民의 출가가 단
순히 피역에만 있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한편, 지금까지 통설로 자리 잡았던
僧의 八賤신분론 또한 재고해 볼 여지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다음
으로 살펴 볼 천민 신분의 출가자의 경향을 살펴볼 때 이러한 점이 더욱 도
드라진다.

『단성현호적대장』에서 확인되는 노비 출가자의 수는 총 33명이다. 奴 30명,
婢 3명으로 구분되며 이들의 호내위상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主戶에
예속된 노비인 경우이다. 『단성현호적대장』에서는 총 19건이 확인되다. 둘째,
별도의 호를 구성하고 있는 奴의 가족인 경우이다. 자식인 경우가 13건, 弟의
경우가 1건 확인된다.

먼저 主戶에 예속된 노비의 경우 중 일부 사례를 상세하게 살펴보자.

1717년 원당면에서 출가한 時哲(시철)은 奴이다. 시철은 주인인 이동리(李
東履) 호에 소속된 인물로 41세의 나이에 출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717년
당시 이동리의 호에는 총 56명의 노비가 소속되어 있었다. 도망 또는 다른
지역에居하는 노비 등을 제외하면 호내에 총 7명의 노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⁴²⁾ 1717년 단성현 유학호의 평균 노비소유수는 戶 당 4.90명이었
다.⁴³⁾ 이를 고려할 때 이동리의 경우 단성현 양반의 평균보다 많은 수의 노
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경제 규모 또한 단성현 양반의 평균을 웃돌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목할만한 것은 1717년 출가한 것으로 보이는 時哲이 바로 다음 식년인
1720년 호적에 등장한다는 것이다. 다만, 주호였던 이동리가 사망하고 그의
동생인 이동겸(李東謙)이 주호로 등장하며, 時哲 또한 이동겸의 호에 노비로
등장한다. 주호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이동리 호에 소속되어 있던 노비 소유
양상을 명시하는 과정에서 이미 출가한 時哲 또한 함께 기재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2) 총 56명 중 타 지역에居하는 노비가 33명, 도망 6명, 속공 4명 등으로 확인된다.

43) 권기중, 「조선후기 상주목(尙州牧) 향리층의 존재양태」, 『조선시대사학보』 28, 조선시대사학회,
2004, p.62 참고.

1720년 현내면에서 출가한 서필(西必)은 戶長 전성직(田盛稷)에 예속된 奴이다. 主戶 전성직의 경우 총 23명의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도망 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노비를 제외하면 戶內 11명의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중 서필은 良人인 父 서일선(徐日先)과 班婢인 母 선랑(先朗) 사이에서 태어났다. 서필의 母 선랑이 전성직에 예속된 노비였으므로 서필 또한 전성직에 예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만한 것은 『단성현호적대장』 본문에는 婢, 즉 여성의 출가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사찰조에는 役을 지는 남성만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단성현호적대장』 본문에서 보이는 婢의 출가는 여승(비구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인 셈이다.

단성현에서 출가한 婢는 모두 같은 戶에서 등장한다.⁴⁴⁾ 1750년 북동면에서 출가한 삼월(三月), 봉선(奉先), 보리덕(甫里德) 모두 幼學鰥夫 김상택(金尙澤)에 예속된 노비였다. 이들 세 명은 모두 婢 덕개(德介)의 자식으로 확인된다. 주호인 김상택의 가계가 이전 식년이나 이후 식년에서 확인이 불가하여 구체적인 위상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1750년 호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幼學 김상택이 소유한 노비는 총 44명이다. 이 중, 도망 및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노비를 제외하면 호내 거주하고 있는 노비의 수는 7명이다. 출가한 婢 3명의 경우 본문에는 逃去順天爲僧이라 하여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 사실과 함께 도망 간 이후 승이 되었다는 사실도 함께 기재하고 있다. 출가를 통해 逃한 노비를 다른 도망 노비와 마찬가지로 호적에 기재해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주호가 奴일 때, 그의 자식이 출가한 경우이다.

1720년 현내면에서 출가한 奴 老郎(노랑)은 良人인 아버지와 私奴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인 金料奉(김두봉)의 직역은 禁衛保이며 어머니는 私奴 二春이다. 母 二春의 신분은 따라 자식인 노랑 또한 노비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母 二春의 주인은 단성현 원당면에 거주하는 강인재(姜仁

44) “婢德介一所生三月三所生奉先四所生甫里德同婢所生等兄弟逃去順天爲僧”

비 덕개의 1소생 삼월, 3소생 봉선, 4소생 보리덕 등 동비 소생의 형제가 순천으로 도거하여 승이 되었다. (원문은 <부표 3> 참조)

載)로, 그의 직역은 乘節校尉行龍驤衛副司果이다. 노랑이 출가할 당시, 강인재의 노비 소유수는 총 19명이다. 앞선 사례들처럼 강인재 또한 평균 이상의 노비를 소유하고 있어 그의 경제력이 평균을 상회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奴婢는 주인에게 예속된 존재이므로 이들의 출가 원인은 노비의 주인이었던 양반층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기 자료를 통해 노비 출가의 한 가지 원인을 추측해볼 수 있다.

1535년(중종 30)부터 1567년(명종 22)까지 작성된 『목재일기』는 을사사화로 파직된 이문건이 성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며 기록한 일기이다. 당시 생활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당시의 사회상, 특히 양반층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 『목재일기』에는 이문건이 안봉사 승려와 교류하는 내용이 전 시기에 걸쳐 다수 등장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목재일기』에서 언급한 문중 제사이다. 이문건이 유배생활을 한 성주에는 안봉사라는 절이 위치해 있었다. 안봉사는 성주 이씨 조상들의 영당을 안치해놓은 사찰로, 성주 이씨는 매년 정기적으로 안봉사에서 영당제례(影堂祭禮)를 진행하였다. 이때 성주 이씨 문중들이 참석하여 유교제례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 제사는 안봉사 승려들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특히 안봉사에서는 성주 이씨의 제사를 주도하며 이들에게 제사 준비를 구실로 방대한 양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또한 이문건은 안봉사의 역 문제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유향소 등에 관련 문제를 언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⁴⁵⁾ 양반 가문의 제사를 사찰이 주도하여 진행하였다는 사실은 조선시대 양반과 사찰 간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파악할 수 있다.

이상으로 『단성현호적대장』에 나타나는 출가자의 사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양반으로 이해되는 幼學 직역 출가자는 2명이 확인된다. 이들은 모두 출가 직전 또는 직후 직역 상승을 겪었는데, 직역이 상승하기 전에도 일반 군역보다는 높은 직역을 칭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반 직역은 아니지만

45) 박정미, 「16세기 성주 이씨 영당사찰 안봉사의 규모와 운영」, 『태동고전연구』 31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3; 박정미, 「조선 명종대 성주 안봉사의 유불의례 -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 『태동고전연구』 32, 태동고전연구소, 2014; 이성임, 「16세기 안봉사의 사찰잡역고 - 이문건의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영남학』 7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0.

그에 준하는 직역인 校生·武學·業儒 등 양인 상층 직역 출가자는 총 9명으로 양인 출가자 96명 중 9%를 차지했다. 직역이 확인되는 양인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전체의 약 20%에 해당한다. 일반 양인 직역자의 경우는 총 35명이다. 양인 출가자의 37.2%에 해당하며, 직역이 확인되는 양인 중에서는 76%를 차지한다. 노비의 경우에는 총 33명의 출가자가 확인되었다. 이 중 奴는 30명, 婢는 3명이 존재하였으며 婢의 경우 모두 같은 戶에서 출가하였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단성현 출가자의 경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단성현 출가자의 대다수는 양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둘째, 양인 중 상층에 해당하는 출가자의 가계는 직역 상승이 일어날 정도로 경제력이 좋거나 가계 위상이 일반 양인에 비하여 우수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이 있는 가계에서 출가자가 발생한 것이다. 셋째, 노비의 경우 그 주인이 다른 유학호에 비해 더 많은 노비를 소유하였다. 단성현 유학호의 평균 노비 보유수보다 높았던 것이다.

제 4 장 맺음말

조선후기의 호적대장은 중앙의 주도로 각 개인의 신상정보와 함께 개인에게 부과한 職役을 기재함으로써 국가의 역 수취를 위한 장부로 활용되었다. 이에 호적에는 主戶의 직역은 물론 해당 戶에 속해있는 구성원의 직역까지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호적에는 수많은 개인과 다양한 직역이 등장한다. 이에 일찍이 조선시대 사회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지만,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직역들이 다수 존재하기도 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僮이다.

僮은 전통적으로 免役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여기서 면제되는 役이란 일반 양인층에게 부과되는 均역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僮은 호적에 기재되지 않은 채, 지역 등 공납 형태의 役만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6세기를 거치며 을묘왜변, 임진왜란 등에 승군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국가에서는 이들을 役을 질 수 있는 존재로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僮은 남한산성 등에 입번하여 군사적 업무를 수행하기에 이른다. 僮에게 일종의 均역과 유사한 형태의 役이 부과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僮은 여전히 호적에 등장하지 않았다. 僮의 호적 등재가 1675년에 이르러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적어도 17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僮을 완전하게 국역체계에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僮이 산성 등에서 일정한 군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국가는 僮을 관리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1675년 윤희에 의해 僮의 호적 등재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윤희는 이전까지 호적에 등재되지 않았던 僮을 本鄉의 호적에 등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僮의 호적 등재와 함께 오가작통제가 등장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오가작통제는 국가가 지방 촌락까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양역 자원을 확충하고자 한 시도로 이해된다. 달리 말하자면, 양란 이후 양역 자원의 확보가 시급했던 상황에 僮을 호적에 등재시킴으로써 국가는 僮을 역을 부과하는 대상으로 포섭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僮의 호적 등재 과정과 결과를 살펴볼 때, 호적 상에서 별도로 명시한 사찰조에서 확인되는 僮戶를 기준으로 삼았다. 僮戶는 호적 작성 과정에서 사찰을 面 단위로 취급하여 僮만을 별도의 호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기재 방식을 살펴보면 主戶가 되는 僮의 성명 또는 법명, 연령, 본적, 四祖를 기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18세기 초반까지는 僮 앞에 직역 및 신분이 기재되었으며 18세기 중반부터는 신분을 나타내는 표현이 사라지고 主戶의 직역이 모두 僮으로 통합되었다. 또한 기재 양상이 단순화됨에 따라 奴婢僮도 점차 소멸하기 시작했다. 이는 호적 본문이 단순화되는 경향과도 유사하다. 18세기 부세 파악 방식이 정착화되는 현상에 僮戶 또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재 방식 및 변화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僮의 존재 양상을 당시의 국역 정책과 연결 지어 설명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僮戶를 통해서는 僮의 혈연 관계 및 가계의 위상 등을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즉, 僮戶만으로는 僮 개인에 대한 양상을 밝힐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僮이 된 개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밝히기 위해 호적 본문에서 확인되는 출가자(爲僮)에 주목했다.

『단성현호적대장』에 등장하는 출가자는 총 129명이다. 면별로 살펴보면, 생비량면에서 가장 많은 출가자가 등장하였으며 원당면에서 가장 적은 출가자가 등장하였다. 이는 단성현 면별 특징이 반영된 결과였다. 생비량면은 단성현에서 가장 많은 戶를 보유한 면이었다. 戶口수가 많아 자연스레 출가자의 수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원당면의 경우, 戶口수에 비해 적은 수의 출가자가 등장하였다. 원당면에 상층호가 많아 호구 대비 일반 양인의 출가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실제 단성현 출가자 중 奴婢 출가자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상층호가 많았던 원당면에서 다수 출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8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 과반수가 넘는 출가자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18세기 중반부터는 큰 변동 없이 고정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전반 양역확보책의 일환으로 단성현의 역충이 크게 상승하며 생긴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면별·시기별 출가자의 추이만으로는 조선 후기 僧의 존재 양상을 파악할 수 없다. 이에 僧 개인의 직역에 주목하여 이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출가자의 출신 직역이 幼學으로 대표되는 양반층부터 奴婢까지 다양했음을 확인하였다. 幼學의 경우 2명의 출가자가 확인된다. 일반 양인이지만, 상층 직역에 해당하는 校生·業武·武學 등 상층 직역자의 출가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들은 모두 특정 시기에 직역 상승을 겪은 가계였다. 즉, 직역이 상승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위상을 지니고 있던 가계였던 것이다.

일반 균역층의 경우, 가장 많은 출가자가 등장하였다. 이에 保人·匠人 등 다양한 직역의 출가자들이 확인된다. 그 중에서도 父나 兄弟의 직역이 상승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일반 균역층 내부에서도 여러 양상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僧戶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던 良人僧의 존재를 넘어 그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출가자의 직역은 幼學부터 일반 양인의 직역인 保까지 다양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은 奴婢 출가자의 양상이다. 『단성현호적대장』에서는 총 33명의 奴婢 출가자가 확인된다. 奴婢는 주인에게 예속된 존재였으므로 이들의 출가는 양인의 출가와는 조금 달랐을 것이다. 이에 奴婢의 주인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어떤 가계의 노비가 출가하였는지 살폈다. 그 결과 출가한 奴婢의 주인은 단성현 유학호의 평균 노비수보다 많은 노비를 보유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때 이들의 출가 원인 중 하나로 당시 사찰과 양반의 관계가 주목된다.

16세기 작성된 『목재일기』에서는 사찰과 양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등장한다. 『목재일기』의 저자 이문건이 사찰과 교류하는 내용이 전 시기에 걸쳐 다수 등장하는데, 이때 안봉사에서 성주 이씨 가문의 제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즉, 노비의 출가 원인 중 하나로 양반과 사찰의 긴밀한 관계 아래 양반에게 예속된 奴婢가 출가하였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호적대장 상에서 나타나는 출가자는 양반 직역으로 인식되는 유학층으로부터 양인 중 상층직역을 가지는 이들, 保로 나타나는 일반 양인층과 노비 출가자까지 다양한 양상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조선 후기 출가자의 신분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사료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經國大典』

『戶口摠數』

『丹城邑誌』

『丹城縣戶籍大帳』

2. 단행본

이준구, 『朝鮮後期身分職役變動研究』, 일조각, 1997.

호적대장연구팀,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손병규, 『호적』, 서울: 휴머니스트, 2007.

3. 학술논문

권기중, 「조선후기 상주목(尙州牧) 향리층의 존재양태」, 『조선시대사학보』 28, 조선시대사학회, 2004.

_____, 「조선후기 호적 연구의 현재와 향후 과제」, 『대동문화연구』 10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7.

권내현, 「숙종대 지방통치론의 전개와 정책 운영」, 『역사와 현실』 25, 한국역사연구회, 1997.

김경란,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양녀(良女)” 기재실태와 성격 - 『단성현호적대장』을 중심으로 -」, 『조선시대사학보』 29, 조선시대사학회, 2004.

김선기, 「조선후기 僧役의 제도화와 운영 방식」,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 노영구, 「단성호적의 사료적 성격 : 조선후기 호적대장 연구현황과 전산화의 일례」, 『대동문화연구』 3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 미야지마 히로시, 「조선시대의 신분, 신분제 개념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4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 민순의, 「요역의 관점에서 본 조선 초 僮役의 이해 : 도첩제도의 정비와 관련하여」, 『종교문화비평』 39,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21.
- 박정미, 「16세기 성주 이씨 영당사찰 안봉사의 규모와 운영」, 『태동고전연구』 310,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3.
- _____, 「조선 명종대 성주 안봉사의 유불의례 -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 『태동고전연구』 32,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4.
- 서한규, 「영·정조대 납속제도의 실시와 납속부민층의 존재」, 『조선사연구』 1, 조선사연구회, 1992.
- _____, 「조선 선조·광해군대의 납속제도 운영과 그 성과」, 『역사교육논집』 20, 역사교육학회, 1995.
- 손병규, 「18세기 良役政策과 지방의 軍役運營」, 『군사』 39, 국방군사연구소, 1999.
- _____, 「호적대장 직역기재 양상과 의미」 『역사와 현실』 41, 한국역사연구회, 2001.
- _____, 「호적대장 직역란의 균역 기재와 ‘都已上’의 통계」 『대동문화연구』 3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 손성필, 「조선시대 승려 팔천신분론의 재검토」, 『보조사상』 40, 보조사상연구원, 2013.
- _____, 「조선시대 불교사 자료의 종류와 성격」, 『불교학연구』 39, 불교학연구회, 2014.
- 송양섭, 「19세기 유학호의 구조와 성격-『단성호적대장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4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4.
- _____, 「19세기 유학층의 증가양상-『단성호적대장』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55, 한국역사연구회, 2005.
- 양혜원, 「조선초기 법전의 ‘僮’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윤용출, 「조선후기 僧役의 변동과 金井山城」, 『한국성곽학보』 6, 한국성곽학회, 2004.
- 이동규, 「조선후기 군관직역자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이성임, 「16세기 안봉사의 사찰잡역고 - 이문건의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영남학』 7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0.
- 이종서, 「조선후기 울산 지역 불교사찰의 호구와 사세의 변동」, 『역사와 경제』 96, 부산경남사학회, 2015.
- 장경준,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승려 등재 배경과 그 양상」, 『대동문화연구』 5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 정해은, 「조선 정조 대 훈련원 정비의 방향과 그 의미 - 1797년의 <훈련원절목>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88, 호남사학회, 2022.

부 록

〈부표1〉 『단성현호적대장』에서 주호승의 식년별 추이

식년	1678	1717	1720	1729	1732	1735	1750	합계
명	65	49	58	58	31	23	-	
식년	1759	1762	1780	1783	1786	1789		503
명	44	36	37	37	37	36		

〈부표2〉 『단성현호적대장』 출가자 인물 정보

번호	식년	면명	이름	나이	前직역	現직역	後직역	확정직역 46)	양/천
1	1678	원당	戒信	30	-	奴	私奴僧	奴	賤
2			李介孫	20	-	미기재	-	미상	良
3		북동	金孫萬	10		미기재		미상	良
4			曹應迪	20		미기재	驛吏	驛吏	良
5		도산	日億	-	-	미기재	-	미상 *雇工	?
6			日鶴	-	-	미기재	-	奴 ⁴⁷⁾	賤
7	1717	원당	時哲 ⁽¹⁾	40	-	奴	奴	奴	賤
8		도산	日千	20	-	미기재	束伍保	束伍保	良
9		생비량	張世弼	20	-	生鐵匠	生鐵匠	生鐵匠	良
10			安順迪	10~ 20	-	미기재	-		良
11		법물야	鄭石萬	20	-	僧	-		良
12	1720	원당	時哲 ⁽²⁾	40	奴	奴	-	奴	賤
13		현내	老郎	10	미기재	미기재	-	奴	賤
14			金必	20	-	미기재	-	奴	賤
15			西必	10	奴	奴	奴	奴	賤
16			姜五尺未	20	鄉校 齊直	미기재	-	鄉校 齊直	良
17	毛發		30	-	奴	-	奴	賤	

번호	식년	면명	이름	나이	前직역	現직역	後직역	확정직역 46)	양/천	
18		오동	崔尙伊	20	星州 砲保	미기재	-	星州 砲保	良	
19			朴順己	10	미기재	미기재	水井保	水井保	良	
20		도산	日發	20	奴	미기재	-	奴	賤	
21			高秋日	0~9	病人	病人	-	病人	良	
22		생비량	吳白金	10	미기재	僧	-		良	
23			朴晉公	30	水保	僧	-	水保	良	
24		신등	永奉	10	미기재	僧	-		賤	
25		법물야	張岳只	-	-	僧	-		良	
26		1729	오동	姜晋右	10	미기재	미기재	-		良
27				金丁三		-	晋州 武學	-	晋州 武學	良
28	朴順昌			20	道川 院生	僧	-	道川 院生	良	
29	북동		姜順郎	0~9	-	미기재	-	-	良	
30			於屯伊		-	미기재	-		良	
31			金貴才	10	驛吏	미기재	驛吏	驛吏	良	
32			朴厚世	20	新安驛 李必保	驛吏李必 保	-	驛吏李必 保	良	
33			朴必萬		-	미기재	-		良	
34			도산	鄭貴日		-	僧	-		良
35				鄭仲鳴	10	醫生保	미기재	-	醫生保	良
36	金斗會			0~9	미기재	미기재	-		良	
37	何春			30	-	奴	奴	奴	賤	
38	생비량		朴進國 (1)	10	-	水軍	僧	水軍	良	
39			趙自必	30	水保	僧	-	水保	良	
40			郭日福		-	僧	-		良	

번호	식년	면명	이름	나이	前직역	現직역	後직역	확정직역 46)	양/천	
41			成岳只		-	미기재	-		良	
42			林元必	10	-	僧	甕匠	甕匠	良	
43			신등	趙才右	10~ 20	-	-	-		良
44				於屯伊		-	私奴	-	私奴	賤
45			법물야	○仁望	20	-	兵營炊飯軍僧	兵營炊飯軍	兵營炊飯軍	良
46				吳汗命		-	僧	-		良
47	1732	원당	太萬	10	奴耳聾病人	奴	-	奴	賤	
48		오동	尹就三	20	미기재	미기재	-		良	
49			朴世科	10	業儒	미기재	-	業儒	良	
50		북동	姜老積	20	驛吏李厚世保	驛保	-	驛保	良	
51			金德還	20	宜寧刻手保	宜寧刻手保	-	宜寧刻手保	良	
52		도산	權岳發	20	軍餉保	미기재	미기재		良	
53			梁萬得	10	미기재	미기재	印出匠	印出匠	良	
54		생비량	朴進國(2)	10	水軍	僧	-	水軍	良	
55			俞件里泰	20	樂工保	樂工保僧	-	樂工保	良	
56			秋仲伊	10~ 20	-	僧	-		良	
57			姜今生	10	미기재	僧	水保	水保	良	
58		신등	五乙發	10	-	미기재	-	奴	賤	
59		법물야	姜世才	10	私奴	僧	-	私奴	賤	
60			金孝昌	20	-	僧	-		良	
61	1735	원당	鄭萬壽	20	幼學	-	-	幼學	良	
62		오동	太才	10	奴	奴	-	奴	賤	
63		도산	何春	30	奴	奴	-	奴	賤	
64			必才	30	奴	奴	奴	奴	賤	

번호	식년	면명	이름	나이	前직역	現직역	後직역	확정직역 46)	양/천
65	1750	생비량	權惡發	30	미기재	미기재	-		良
66			林朴尙	0~9	미기재	僧	-		良
67			河先昌	0~9	미기재	僧	-		良
68			金自泰	10	미기재	僧	-		良
69			李大弘	10	慶安驛 奴	慶安驛 奴	-	慶安驛 奴	賤
70			林石只	?	-	甕匠僧	-	甕匠	良
71		신등	二赤	10	미기재	미기재	-		良
72		법물야	尹處三	20	禁衛保	僧	-	禁衛保	良
73			鄭時同	10	-	僧	-		良
74			馬世弘	10	미기재	미기재	-		良
75			李孟延	10	校生	僧	-	校生	良
76		원당	介男	10	-	奴	-	奴	賤
77		현내	李連彭	10	-	미기재	武學	武學	良
78			李岳只	10	-	미기재	-		良
79		북동	河德器	-	-	미기재	-		良
80	李岳只		-	-	미기재	-		良	
81	李己先		50	晋州御營 保	미기재	晋州御營 保	晋州御營 保	良	
82	李岳只		10	-	미기재	騎保	騎保	良	
83	李奉汗		30	-	미기재	京案保	京案保	良	
84	九世		20	미기재	미기재	-		良	
85	三月		-	-	婢	-	婢	賤	
86	奉先		-	-	미기재	-	奴	賤	
87	甫里德		-	-	婢	-	婢	賤	
88	도산		以行	60	-	奴	-	奴	賤
89		金岳只	20	-	미기재	-		良	
90		鶴先	10	-	僧	-	奴	賤	

번호	식년	면명	이름	나이	前직역	現직역	後직역	확정직역 46)	양/천	
91			自 卍 必	20	-	奴	-	奴	賤	
92			朴 卜 己	10	-	僧	-		良	
93			생비량	金成甲	10	-	미기재	-		良
94			신등	金山陰	30	禦營保	僧	-	禦營保	良
95			법물야	古邑木	-	-	私奴僧	-	私奴	賤
96	1759		오동	蕊金	40	-	奴	-	奴	賤
97			도산	金伊岩 回	-	-	미기재	-		良
98			법물야	古邑代	-	-	僧	-		賤
99				卞孟先	-	-	僧	-		良
100				金世昌	-	-	僧	-		良
101				小北實	10~ 20	-	私奴僧	-	私奴	賤
102	1762		도산	鄭繼昌	10	-	驛保	-	驛保	良
103			생비량	李聖孫	10	미기재	僧	-		良
104				金岳只	20	私奴	僧	-	私奴	賤
105				鄭海水	20	烽燧保	僧	-	烽燧保	良
106				曹雪才	10	-	僧	-		良
107				李萬根	10	-	僧	幼學	幼學	良
108				신등	沈云京	20	禦營保	僧	-	禦營保
109			金七種		20	陸軍	僧	-	陸軍	良
110			법물야	姜大岳	20	採藥軍	採藥軍 僧	-	採藥軍	良
111				李德奉	10	禁衛保	僧	-	禁衛保	良
112			1780	현내	聖大	10	-	미기재	-	
113	李得中	10~ 20			-	미기재	-		良	
114	도산	姜介孫		-	-	미기재	-		良	
115		自 ㄱ 必		50	-	奴	-	奴	賤	

번호	식년	면명	이름	나이	前직역	現직역	後직역	확정직역 46)	양/천
116		생비량	金尙渭	20	-	僧	水軍	水軍	良
117		신등	沈尙太	10~20	-	미기재	-		良
118		법물야	吳國良	10~20	-	僧	-		良
119			金小用 岩回	20	-	僧	僧		良
120			金甲戌	20	馬兵保	馬兵僧	-	馬兵	良
121	1783	북동	金世才	10	미기재	미기재	-	-	良
122		생비량	許○○	10		僧	-	-	良
123			林仲孫	20	內軍官 保	僧	-	內軍官 保	良
124			黃德才	10	良軍官	僧	-	良軍官	良
125			신등	鄭尙右	20	驛保	驛保	-	驛保
126		李日奉		20	形房保	形房保	形房保	形房保	良
127		법물야	崔萬采	20	良軍官	僧	-	良軍官	良
128		1786	오동	○云石	10	미기재	미기재	-	-
129	1789	법물야	金東三	20	藥保	僧	-	藥保	良

46) 확정 직역 : 출가 직전 役과 출가 당시 役을 고려하여 작성됨 (ex. 1678년 私奴인 경우 확정 직역 私奴 / 1717년 水保, 1720년 僧인 경우 확정 직역 水保)

47) 1678년 일학(日鶴) : 主戶인 兄 日萬의 직역이 守珍宮奴이며 父 돌복(堧卜)의 직역이 私奴, 母 일진(日眞)의 직역이 內婢인 점을 고려할 때 일학 본인도 奴로 추정됨

第統

第二統之首金尚澤

一戶幼學繇夫金尚澤年參拾捌癸巳本光山父道德郎德潤祖學生就礪曾祖道訓大夫行德源府使厚
 元外祖兼節校尉龍驤衛副司果金德龍本金海率縞母鄭氏年陸拾伍丙寅籍晉州率女故婢介春年伍拾肆
 丁丑逝奴婢秩婢小德年柒拾捌癸丑奴時去年丁丑婢四月年丁亥婢吉音德一所生奴介同年甲戌婢守良壹
 所生婢月上一所生者介阿布年參拾柒甲午二所生婢己里化年參拾參戊戌三所生元柱年拾柒甲寅四所生
 奴元男年玖壬戌父良人許命男順天遠居婢德介一所生婢三月三所生奉先四所生婢甫里德同婢所生等元
 弟遠居順天為僧婢初此禮一所生奴山人景淵二所生婢小代同婢一所生婢奉業二所生婢奉接等順天在
 水營沙鉄村居奴次危一男生奴季立二所生奴弘立三所生婢禮介等肆口進居順天有面毛廟谷奴得春
 良妻并產一所生奴得仁年兩歲五所生婢乙化年乙巳三所生奴仁得年戊申四所生婢得女年辛亥五所

ABSTRACT

The Status and Existence of Buddhist Monks in Late Joseon
–A Study Focused on 17th–18th Century Danseong Hojeok–

Kim, Meeyoung

Major in Korean History

Dep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Hojeok (household register) functioned as a pivotal administrative record in late Joseon Korea, systematically documenting personal demographic data alongside occupational assignments. These registers served as critical instruments for managing the state's fiscal and labor systems, providing detailed accounts of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both household heads and their dependents. Given their extensive documentation of diverse occupational categories, Hojeok registers have been extensively utilized as primary sources in the study of Joseon social history. Nevertheless, numerous occupational classifications remain insufficiently investigated, with the classification of Buddhist monks (Seung) being a particularly understudied category.

Historically, Buddhist monks were perceived as exempt from state-imposed labor obligations. However, following the socio-economic disruptions caused by the Imjin War and subsequent conflicts, the state

sought to expand its labor resources, leading to the official inclusion of monks in Hojeok records in 1678 (the 4th year of King Sukjong's reign). This marked a significant institutional shift, positioning monk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tate's labor and fiscal policies. Prior research has predominantly focused on Seungho (monk households), specialized registers documenting monks subject to corvée obligations. However, such studies have been limited in scope, often neglecting the socio-economic diversity and individual contexts of monastic entrants.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by analyzing individuals recorded as “becoming monks” (Weseung) in the Danseong Hojeok spanning the 17th and 18th centuries. By integrating an analysis of the occupational roles of these individuals with the occupational histories of their ancestors (Sajo), the research reconstructs the socio-politic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underpinning monastic ordination.

The findings reveal that 129 individuals were documented as entering the monastic order in the examined registers. Their socio-economic backgrounds exhibit remarkable diversity, ranging from elite yangban households, represented by Yuhak (Confucian scholars), to marginalized groups such as Nobi (slaves). Among the upper echelons, individuals classified as Kyosaeng (Confucian students) and Muhak (military students) were often associated with households that had undergone upward occupational mobility, reflecting significant economic resources or elevated social prestige.

The majority of monks, however, originated from the general service class, including occupations such as Boin (guards) and artisans. Within this cohort, notable patterns of intra-family mobility were observed, with occupational advancements among fathers or siblings indicating the complex stratification within the commoner class. These insights challenge previous conceptions of monks as a homogeneously commoner-based category and reveal a broader spectrum of socio-economic origins.

Furthermore, the study highlights the ordination of Nobi (slaves), whose

entry into monastic life was contingent upon the directives of their owners. Analysis of these slave-owning households indicates that masters permitting such ordinations typically possessed significantly higher numbers of slaves compared to the regional average, underscoring specific socio-economic dynamics enabling such transitions.

By elucidating the heterogeneous composition of Buddhist monks—including elite intellectuals, economically ascendant commoners, general service workers, and enslaved individuals—this research provides a nuanced perspective on the institutional and socio-political roles of the monastic community in late Joseon Korea.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era's social stratification and the intersection of religious and state systems.

【Key-words】 Danseong Hojeok(丹城縣戶籍大帳), Buddhist monks(僧), becoming monks(爲僧), labor of Buddhist monks(僧役), class(身分)